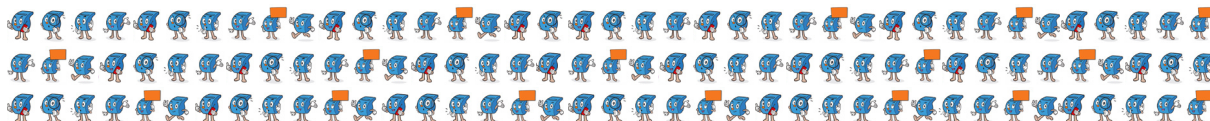


발 간 물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80-14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머 리 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되었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이나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제도는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고, 미국에서도 내부고발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라고 한다.

‘밀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소비자운동가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란 단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던 예에서 보듯 내부신고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진화된 사회에서도 오랜 고민거리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신고자를 공익증진의 협력자로 재인식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담겨져 있는 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하는 일선의 업무 담당자부터 일반 국민까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개정과정 그리고 각 조문에 대한 해설(요건, 효과 등)을 담은 해설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할 때의 유의사항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까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 해설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Contents

I.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 | |
|------------|---|
| 1. 제정 배경 | 3 |
| 2. 주요 개정내용 | 5 |

II.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9
------------	------------	----------

- | | |
|------------------|----|
| 1. 제정 목적 | 9 |
| 2. 용어의 정의 | 11 |
| 2-1. 공익침해행위 | 11 |
| 2-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 19 |
| 2-3. 불이익조치 | 24 |
| 2-4. 내부 공익신고자 | 27 |
| 3. 국가 등의 책무 | 30 |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3 |

제2장	공익신고	34
------------	-------------	-----------

- | | |
|--------------------------|----|
| 1. 공익신고 기관 | 34 |
| 2.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 38 |
| 3. 공익신고의 방법 | 39 |
| 4. 비실명 대리신고 | 42 |
| 5.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및 이첩 | 45 |
| 6. 보호·지원 안내 | 49 |
| 7.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 52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69

1. 비밀보장	71
2. 신변보호	77
3. 책임의 감면 등	79
4.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84
5. 보호조치	86
6. 이행강제금	104
7.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107
8. 불이익조치 추정	110
9. 화해제도	113
10. 협조 등의 요청	115
11.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117

제4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122

1. 보상금	123
2. 포상금	132
3. 구조금	135
4.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및 환수 등	141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45

제5장 벌 칙 147

1. 벌칙 및 과태료	147
2. 양벌규정	148

제6장 참 고 150

참고 1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해외 입법례	150
참고 2 공익 유형별 대상법률	151
참고 3 「신고성 민원」의 개념 및 유형	162
참고 4 포상금 지급기준	163
참고 5 중앙행정기관 운용 신고포상금제도 현황	168
참고 6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174
참고 7 서 식	182



I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1. 제정 배경
2. 주요 개정내용

1

제정 배경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200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으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법 시행 전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 당시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중이던 한국계 미국인의 제보로 용산 주둔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공개됨
- 미8군 사령관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제보자에 대해 재계약 거부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하는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보
- 재판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 출국금지 조치됨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로 인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지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인 것이다.

2011년 10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통제와 신고자 보호를 새롭게 시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89년 해상유전인 파이프 알파에서 1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안전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안전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998년 영국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식품의 위장 표시 사건, 미쓰비시 자동차 리콜 은폐 사건 등이 사업장 내부 근로자 등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직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은 부정청구법,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참고1.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해외 입법례)

2

주요 개정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2019.5월 현재까지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고의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범위를 넓히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가 제1차 개정(2014년 1월 14일 시행)

-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 등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 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제2차 개정(2016년 1월 25일 시행)

- 180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99개 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다 3차 개정(2017년 10월 19일 시행)

-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 보상금·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4차 개정 주요 내용(2018년 5월 1일 시행)

- 기존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추가하였다.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불이익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긴급구조금 제도를 도입 하였다.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 신고자 신분공개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위 반 행 위	개 정 전	개 정 후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영 제22조, 2018.4.30. 개정)하였다.

마 5차 개정 주요 내용(2018년 10월 18일 시행)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보호·지원 신청 등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신설하였다.
- 보호조치 이행강제금을 강화하였다.

상한금액	부과횟수	부과기한
2천만원 → 3천만원	연 2회 이내(변동없음)	2년 이내 → 이행시까지



II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신고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4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5장 벌칙

제6장 참고

제 1 장 총 칙

1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오염 등 민간의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및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는 그 복잡성과 전문성이 크고, 그 피해의 규모도 커서 사후 대처로는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 법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 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율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신고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맞추어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인이 이를 찾아내어 신고하기에도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공익침해행위를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해주고,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내부 감시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으로써 사전에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

보잉사 여객기 부적격 부품 사용

- 2006년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737 여객기에 부적격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이 전 보잉사 직원의 내부고발로 드러남
- 보잉사 감사팀이 실제 문제를 발견해 지적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입을 다물게 했다고 밝힘
- 당시 보도에 따르면 보잉 737기의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보잉 737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음

폭스바겐 배기가스 절감장치 조작

- 2015년 폭스바겐에서 배기가스 절감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각국 정부에서 판매금지, 리콜,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2011년에 폭스바겐의 기술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보고한 바도 있었으며, 미국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몇 주 전에 디젤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폭스바겐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았고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용어의 정의

2-1 공익침해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사전적, 일반적 개념과는 구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 공익신고 대상 284개(2019년 6월 현재) 법률을 위반하여 ③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등 법률 위반시 제재수위도 높아 사전에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열거적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공익신고의 대상을 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및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

영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 포괄적 정의 규정

- 범죄행위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 위반행위 및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행위의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개인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위험행위 또는 환경 파괴행위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 개별적 열거규정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별표로 열거한 법률(468개 법령, 2018.11.15. 현재)이 규정하는 죄의 범죄사실(법률에 의거한 명령위반 포함)

▶ 공익침해행위의 요건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284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은 비록 284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6대 공익분야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한편, 최근 법원은 실제 해당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상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1) 5대 공익분야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우선,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분야는 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의 5대 분야이다. 5대 공익의 범위는 일률적·확일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공익’의 범주를 5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새로운 공익침해 유형과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법률(분야)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법률은 열거적(제한적)으로 규정하되, 공익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5.1. 시행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신설하였다. 현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법률로는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석론¹⁾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총 6가지 유형의 공익을 열거하고 있다.
- 여기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2가지 해석론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①~⑤까지의 공익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공익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둘째, ①~⑤에 해당하는 공익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 두 번째 해석론에 따른 경우 향후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추가하고자 할 때,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제외한 많은 법률들 중 5가지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들도 존재할 것인바, 이러한 법률들을 추가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편입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첫 번째 해석론은 ①~⑤까지의 공익 외의 중요한 기타 공익에 해당하는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5가지 공익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유형의 공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물론 5가지의 공익은 주요한 공익이므로 대부분의 법률이 5가지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법률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만 보더라도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 중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법률은 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예컨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은 5가지 유형의 공익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가치를 가진 공익으로서 미연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섭시키지 못한 법률들을 향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84개 법률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 대상

가) 법 별표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참고2. 공익유형별 대상 법률 구별).

신고자 보호법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불법적, 비윤리적 혹은 위험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대상 신고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다는 의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정 당시 180개이던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두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등의 법률을 추가하여 2019. 5월 현재 284개로 확대하였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될 수 있다.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정책연구용역(2019)

나) 공익침해행위는 284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284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284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284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벌칙(형)의 종류(「형법」 제41조)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284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시행령 제3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질의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가목),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통하여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답 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처리절차 및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 신고자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목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제1호),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제2호),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고, 그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신고 처리절차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받은 공익조사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받은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해당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라 함)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란 ①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과 ②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가령 공익신고 내용이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을 원인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규율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개별 법률에서 행정 편의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행위도 모두 공익침해행위로 간주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바, 이렇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전혀 별개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운영되는 180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입법목적에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함께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공익침해행위 예시

제1장

총 칙

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94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는데, 사업주는 무재해 달성을 위해 공상으로 처리하고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워크레인 무자격자 설치)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시공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자 5명 중 4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불법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건축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매립한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6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석면건축물로 신고된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6개월에 한 번씩 석면의 손상성 및 비산성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나 석면자재에 손상이 있었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단 운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
☞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양곡관리법」 제21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80여개 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상환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채용서류 반환 안내사항 일부 미고지) 구인자가 직원채용 공고시 채용서류 반환을 안내하면서 서류 반환 청구방법, 서류 보관기간 및 파기, 반환시 소요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하나, 일부만 고지한 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공급계약 체결) 방산업체가 허위 그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 「방위사업법」 제6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공익신고의 개념

- 1) “공익신고”란 앞에서 설명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해 감독권·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 진정 외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이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 수사의 단서 제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제도가 아니라 이미 284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관련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공익신고의 형태

- **신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진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고소** :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고발** :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제보** :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수사의 단서 제공**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익신고 기관에는 공익신고, 즉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이지만, 민원 형식으로 제기되는 ‘신고성 민원’(참고3. 「신고성 민원」의 개념 및 유형)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실질적으로는 ‘공익신고’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로서 비밀보장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1) 익명·가명신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익명신고 또는 가명신고 등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익명·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위, 부정목적 신고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에 대한 위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의 성실의무와 부정목적의 신고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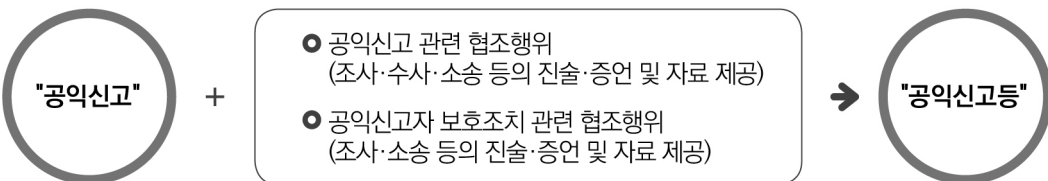


해외 입법 사례: 신고자의 신의성실 의무

-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신고자의 신의성실의 의무 요구
-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하여 사실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
- 영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사익추구(personal gain) 목적의 신고는 보호에서 배제
 - 다만, 사업자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익추구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언론 등 대외신고의 경우에만 적용
 - ※ 개인적 이익(personal gain)은 신고의 대가로 언론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chèque book journalism)하는 것을 의미
-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제2조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그 외의 부정한 목적이 아닌’ 것만을 ‘공익통보’로 인정

▶ “공익신고등”의 개념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소송 등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등”이라고 한다.



공익신고등(예시)

공익신고 관련 협조행위

- 식품회사의 유해물질 포함 농수산물 유통 등을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식품회사 근로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협조하여 식품회사의 불법행위를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

- 염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을 신고한 후 해고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인사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의 지시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의 개념

- 1) “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적격을 내부자 등으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증가하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이익, 공정거래, 환경 분야에 관련해서는 내부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들이 제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자로 신고주체를 한정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색출이 용이하고 유추 가능성이 높아져 신고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보호 대상이 되며, 내부신고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2)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해외 입법 사례: 협조자 등

- **미국의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of 1986)**에는 ‘피고용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나 제기될 소송에 조사, 소송제기, 증언, 기타 조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강등, 업무중지, 협박, 학대 기타 방법으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와 관련된 협조자·조력자까지 보호하고 있음
- **호주 공익신고자보호법(Western Australia,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2003)**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공익정보를 신고했거나 신고하려고 한 자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보복행위로 위협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만4천달러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하려고 한 자도 보호하고 있음

Q 회사의 몇 년 지난 위법행위도 공익신고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 가능하다. 다만, 개별법률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종결처리 될 수 있다.

Q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

A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원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A 공익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다만,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3 불이익조치

제2조(정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해설

▶ 불이익조치 규정의 의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특성은 보복유형이 다양하고, 공식적인 징계해고와 비공식적인 보복행위가 복합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이다.

즉,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해고나 징계 등 공식적인 보복 외에도 자기계발기회 취소, 관련 업계에 요주의 명단 작성·공개 등 비공식적인 보복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명확하고 광범위한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분상, 행정상, 경제상 불이익 조치를 열거하되, 해당 불이익조치 이외에 ‘그 밖에’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여 일응 법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 조치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2014.5.1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507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이유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불이익 조치의 종류를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불이익조치 중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는 해임이나 해고 등 공익신고자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익신고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례

- (시말서 작성) 취업규칙 상 견책을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에 3회 이상의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말서 작성은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로 볼 수 있고, 이는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
- (사직권고) 사직권고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그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
- (연가신청 반려 및 무단결근 처리) 연가반려 및 무단결근 처리는 향후 징계이결시 신분상 불이익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 제6호 마목의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에 해당

Q & A

- Q**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충분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 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을 해고에 이르게 한 불이익조치가 존재

2-4 내부 공익신고자

제2조(정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16. 1. 22.]

취 지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의미를 정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 신고자로 제한하였다

해설

▶ 내부공익신고자의 의미

공익신고는 크게 외부 공익신고와 내부 공익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공익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내부 공익신고는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적·자율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저비용·고효율의 통제수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내부 공익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소속 근로자, 인턴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 ④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 ① **근무관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간의 장단, 계속성을 불문하고 피신고자에 소속된 다양한 형태의 근무관계의 신고자도 포함,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맺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인턴직원 등도 포함됨
- ② **계약관계** : △기본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른 갑을관계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 구매자, 일반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인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되며, 계약에 따른 직접 업무 수행자에 한정되지 않음

- ③ **사실상 영향력 관계** : △피신고자와 신고자가 직접 고용관계,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피신고자가 신고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임,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직원, 피신고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는 계열회사 관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의 직원 등
- ④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지도, 관리 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실상 지도, 관리 감독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신설 내용

- **(보호)**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호조치 신설(법 제20조의2)
-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해 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및 실태조사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보호제도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경찰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처리 및 신고 운영기반 현황을 파악하여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내부의 공익신고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자율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 가이드를 권고하고 있다.

▶ 기업의 책무(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를 위한 기업 가이드)

1) 개 요

누구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 등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제1항).

2)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 체계

가) 공익신고 처리규정 마련

신고 접수방법,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은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규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규정안 예시

1. 내부규정의 목적(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조직적인 또는 개인적인 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상담·신고의 처리방법, 공익침해행위의 조기발견 및 시정, 공익신고자 보호 등)
2. 신고창구(설치부서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령위반행위 여부 상담에 관한 사항 등)
3. 신고방법(인편·우편·전자우편·FAX·전화 등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4. 신고자 및 상담자(기업체 소속 근로자나 거래사업자, 일반소비자 등 신고창구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신고사항 조사 및 협력의무(신고사항 사실확인 등 조사담당 부서, 관계 부서원으로 구성된 조사팀 구성,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서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시정조치 등 기업체의 처분(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강구, 해당 행위 관련자에 대한 취업규칙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신고자 등의 보호(공익신고 상담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등 기업차원의 불이익이나 업무차별, 소외, 괴롭힘 등 조직 구성간의 불이익 처분 금지 및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보호(기업 및 신고업무처리 담당자는 신고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
9. 조사결과와 통지(조사결과 및 시정결과와 신속한 통지, 보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
10. 상담 또는 신고받은 자의 책임(신고 처리담당자에 한정하지 않고, 상담 또는 신고를 받은 자의 성실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소관 및 개폐 등(규정의 개폐권한 소재 및 규정 운용 책임자에 관한 사항)

나) 공익신고 창구 운영

공익신고 처리규정이 마련되었다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고창구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업 내 준법경영팀, 윤리경영팀, 감사팀 등 기존 부서에 설치할 수도 있고, 기업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유사한 신고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창구 운영에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은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다) 공익신고 책임자

기업 내 공익신고 제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여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으로서 경영진의 준법경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익 신고자 보호의 책임자를 기업 내 간부직원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라) 부서간 신고처리 협조체제

사건의 접수, 조사, 공익침해행위 제거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공익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취 지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다수의 개별법령에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신고자 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규정이 있더라도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고, 불이익 금지와 신분보호 조치가 규정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보호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를 하고도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세조종 등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제보하는 경우 20억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
- 신고·제보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 금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 내용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지만,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절차의 진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 2 장 공익신고

1 공익신고 기관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 설

➤ 공익신고 기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이라고 한다. 법 제6조에서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등 4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서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 2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규정함으로써 총 6개 유형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는 284개 법률에 해당 공공단체의 설치 근거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단체라도 284개 법률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대표자 등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필요한 경우 기업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 기관별 공익신고(예시)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의 대표자

- 식품회사의 대표자에게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납품 및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조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

수사기관

- 지방경찰관서에 염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국회의원

- 국회의원에게 철도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

공익신고자가 어느 공익신고 기관을 선택하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조사·수사의 착수,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

Q & A

Q 공익신고 기관으로서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A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조사 기관의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공공단체도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단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소속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공공단체가 공익신고 기관이 될 수 있다.

Q 국회의원의 경우 청원과 공익신고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A 공익신고는 「국회법」 및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청원’과는 다른 제도이다. 청원의 경우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 및 구조 등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보상 조치를 받을 수 없다.

Q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이 접수·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라 할지라도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공익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Q 기업도 공익신고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가?

A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즉 근로자나 소비자가 오·폐수 무단 방류와 같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용자나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기업이면 모두 적용되며, 기존의 신고 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Q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각하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언론에 제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이 인터넷상 기존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신고 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익신고를 준비한 자가 언론에 제보된 내용을 다시 공익신고하는 경우에 공익침해행위를 직접 발견하고 증거자료 수집 등 신고 준비를 한 당사자임이 분명하다면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 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공직자의 신고의무

신고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직자의 경우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이라고 판시(헌재 2009.03.24. 2009헌마118)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에서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무원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직자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의무’를 준수했다면, 이는 사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²⁾

2) 조수영,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137쪽 참조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Q & A

Q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A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Q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신고만 접수해야 하는가?

A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조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경우 신고서에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단순한 전화문의·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Q 공익신고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가?

A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명시해 두어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공익신고의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①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가 284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그 위반에 대한 제재인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적합하다.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익명의 공익신고도 접수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명신고를 전제로 한다. 법 제8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기관등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우편 등으로 익명의 신고가 제출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이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보호·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익명신고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가?

A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신설되어 변호사 대리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변호사가 신고자의 의뢰를 받아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 따라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변호사를 명시하고 있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변호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Q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접수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법 제8조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어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Q 증거자료 제출 없이 구체적인 기술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

A 공익신고를 할 때에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는 공익신고의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기술된 사항만으로도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 사건을 송부하거나 조사·수사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4 비실명 대리신고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취 지

2018. 4. 17. 법률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 설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법 제8조),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신분보호 등 보호조치와 신고자 보상금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대리신고 자료의 관리 등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봉투에 넣고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 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보관(「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한다.

자료의 보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 자료’로 분류하고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입법 사례

- 미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 Act」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922조 및 미연방 행정규칙(증권거래위원회 규정)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 Act」(이하 ‘Dodd-Frank Act’라 함)은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은 후 2010년 금융개혁을 위하여 시행된 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최초로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Dodd-Frank Act 제922조는 증권거래 내부 공익신고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15 U.S.C. §78u-6). Dodd-Frank Act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증권관련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미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이하 ‘위원회’라 함)에 직접 제보할 수 있음
 - 신고의 방법은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는데, 내부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야 함(17 C.F.R. § 240.21F-9)
 - 내부 공익신고자가 포상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가 정보를 익명으로 제출한 경우, 익명으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함. 그리고 포상금을 받기 전에 내부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들도 직접 또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변호사를 통해 제공하여야 함(Dodd-Frank Act 제922조; 15 U.S.C. §78u-6)

Q & A

Q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닌지

A 비실명 대리신고인 경우, 접수담당자의 경우 접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 정보, 위임장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별도의 봉투에 신고자 정보, 위임장 등을 넣어 제출하였다고 하는 경우, 위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접수한다.

Q 비실명 대리신고 위임장 등 신고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A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신고기록물 인수·인계 담당자는 신고기록물 인수·인계서의 신고제목란에 ‘(대리신고)’라고 추가로 표시하고, 기타증거란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위임장’이라고 추가로 표시하며, 신고기록물에 봉인된 봉투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심사부서는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봉인된 봉투 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고,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며, ‘봉인 자료 보관목록, 열람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⑧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시행령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 신고 내용의 확인

1) 형식적 요건의 확인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인지 여부 및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이 첨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익명·가명신고의 경우 공익 신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익명·가명신고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질적 요건의 확인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①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②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 등 6대 공익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이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고의 이첩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시행령 제11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와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련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는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진위여부 사실 확인 후 해당 조사기관 등에 이첩하는 경우와 달리, 신고사항이 이첩할 사항인지,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해당 조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 조사기관등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후속 조치의 필요성

- 기준 미달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한 공익신고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해당 농산물의 회수 또는 친환경 인증 표시 삭제 등 추가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없었음
- 편육 제품 제조중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공익신고를 이첩하자 조사기관에서 해당 공장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첩한 공익신고사건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추가 조치 사항(법 제9조제5항)

-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의신청, 재조사·재수사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권이 신설됨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조사·수사 기관에서는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재수사 요구 사유

-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 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
- 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수사를 진행한 경우
-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수사를 진행한 경우
- 그 밖에 재조사·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시행령

제11조의4(보호·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공익신고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참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③ 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연혁 및 취지

2017. 4. 18.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보호지원 안내 규정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해설

▶ 안내 대상

- 공익신고자
-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
- 보호조치에 대한 조사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참고인

▶ 안내 시기

-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 안내 방법

안내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참조)으로 하되,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안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고자 등이 언제든지 보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위원회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위원회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위원회 의무 지급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개요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 ①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행정, 감독기관 또는 공공단체)·수사기관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수사 방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재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공공단체,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으로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조사·수사기관의 공익신고 조사·수사

1) 신고내용의 조사·처리

조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항인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고,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종결 사유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종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참고 2013.5.16.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32532).

조사기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문서 포함 내용(영 제11조제3항)

-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신고내용의 수사

수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 등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입건·송치·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사 중에 발생하는 피의자 신문, 긴급체포,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의 절차는 형사소송 법령에 따라 진행한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후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익신고에 관한 수사를 종료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익신고 이송·재이첩

가) 공익신고의 이송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직접 접수받은 경우 신고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바로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이송(예시)

-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A씨가 △△건설이 안전난간 설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신고를 함
- ⇒ 공익신고를 접수한 ○○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공익신고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신고내용이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됨을 확인
- ⇒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 A씨에게 통지함

다만, 이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송하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적시에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려는 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시행령 제13조)

-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공익신고의 재이첩

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 공공단체 및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송부

1) 송부기관의 결정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나 국회의원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을 송부기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송부 기관의 결정

1.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284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
2. 284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3.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따라 송부할 기관을 결정
 -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

2) 공익신고 송부 및 통지

공공단체 또는 국회의원은 송부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신고자 신분 비공개 사건의 송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송부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특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익명처리 송부 시 유의사항

-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처리
-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의 직업, 소속 기업 및 담당 업무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비공개(피신고자 보호)

1)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 비공개의 의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당한 자(피신고자)는 신고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명예·신용 등에 큰 훼손을 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이미지·신용의 훼손을 당하는 경우 그 손해는 금전적 보상이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이미지·신용 등의 훼손이 없도록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여 거짓신고·잘못된 신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신고내용 공개에 대한 처벌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

2013.5.16.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32532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8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익명처리 송부 예시

신고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처리 기간	
신고자	이름	김공익		000000 - 1234567	
	주소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연락처	010-1234-5678	소속	(주)공익	
피신고자	이름	박침해			
	소속	(주)침해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상기 본인은 (주)침해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소재 (주)공익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운전 기사로서 (주)침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를 함 2019.6.1.경 (주)침해가 경기도 소재 침해유통으로부터 폐기처분 대상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식품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1. 현장 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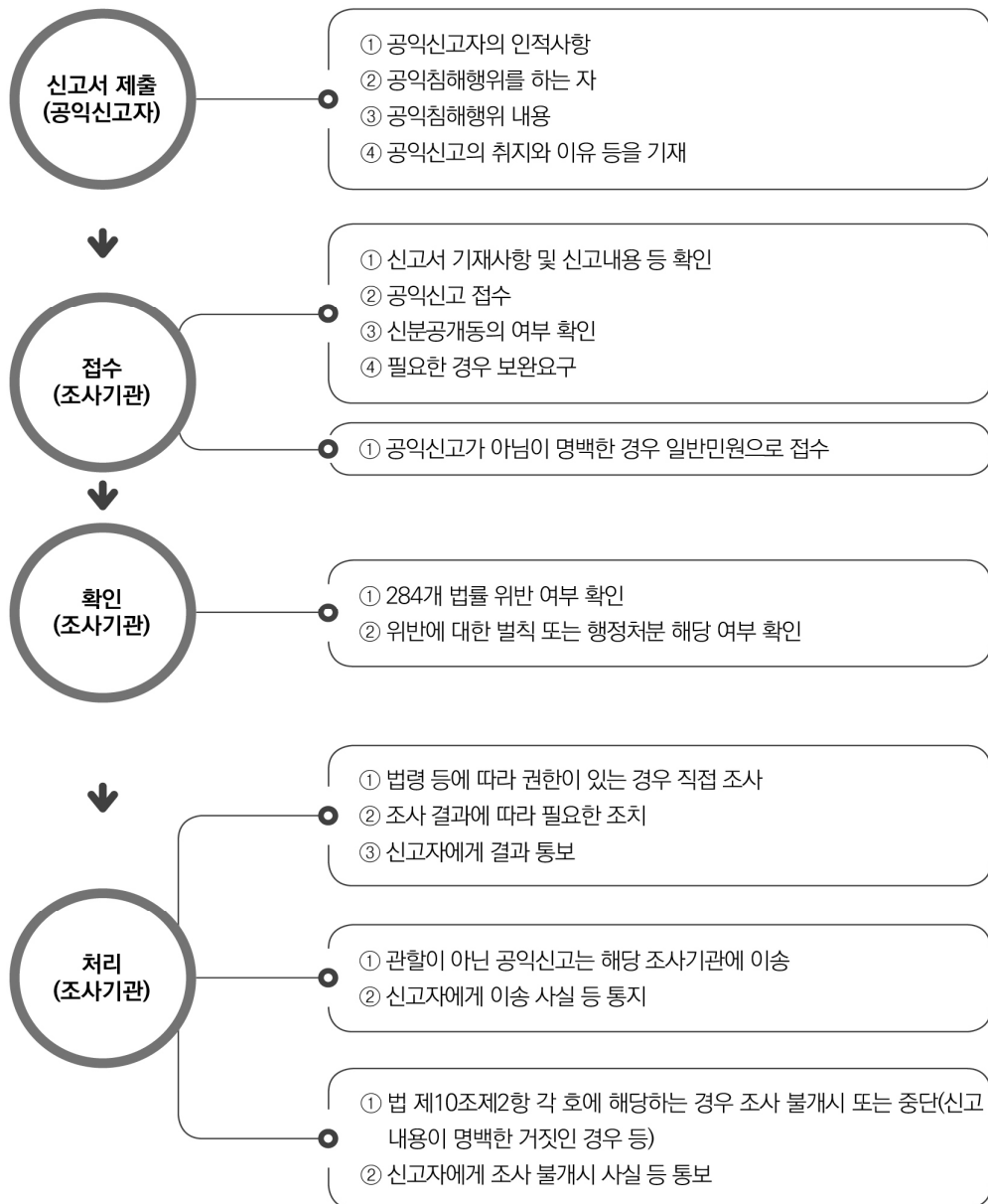
신고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처리 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주)공익	
피신고자	이름	박침해			
	소속	(주)침해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상기 본인은 (주)침해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소재 침해유통으로부터 폐기처분 대상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식품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1. 현장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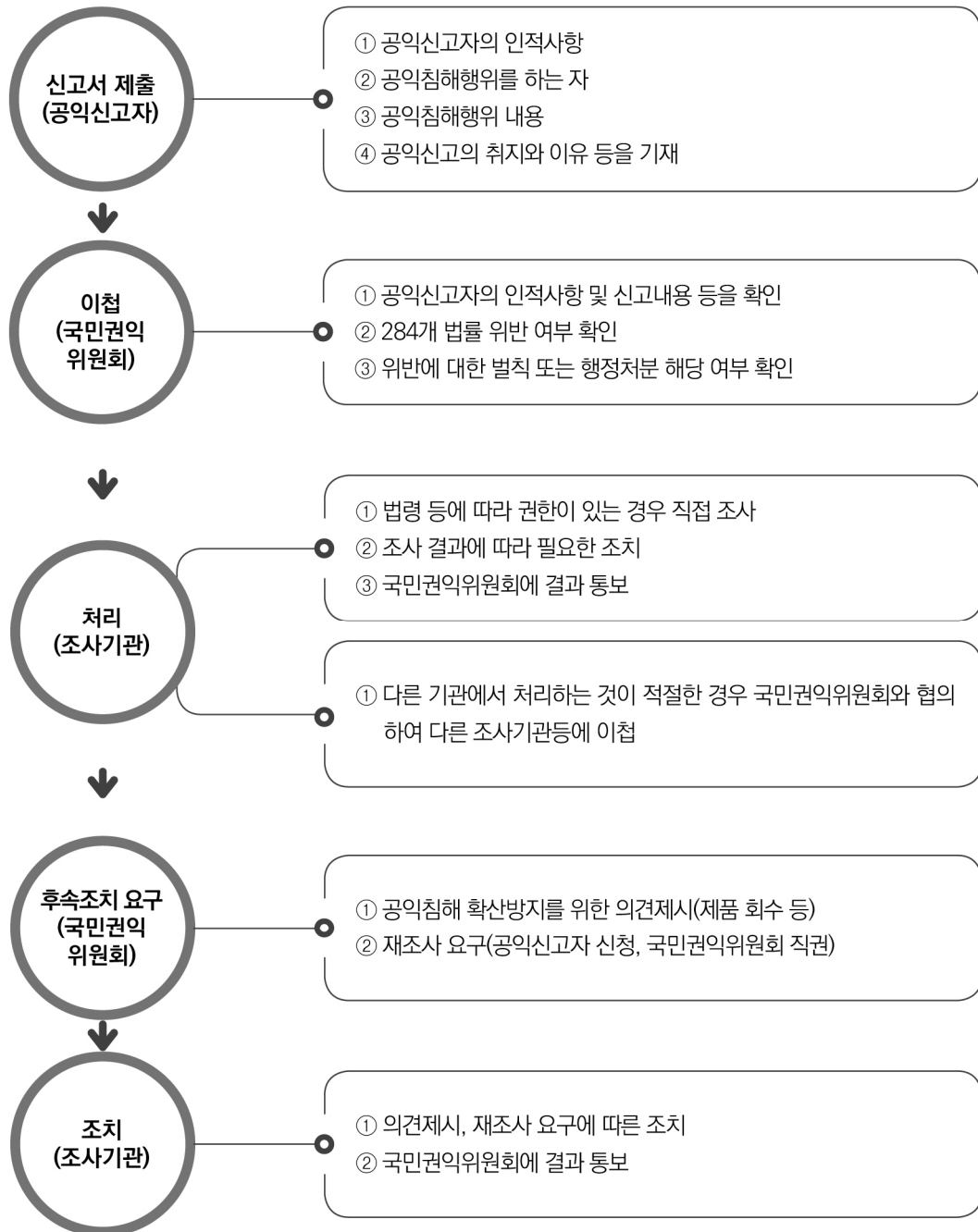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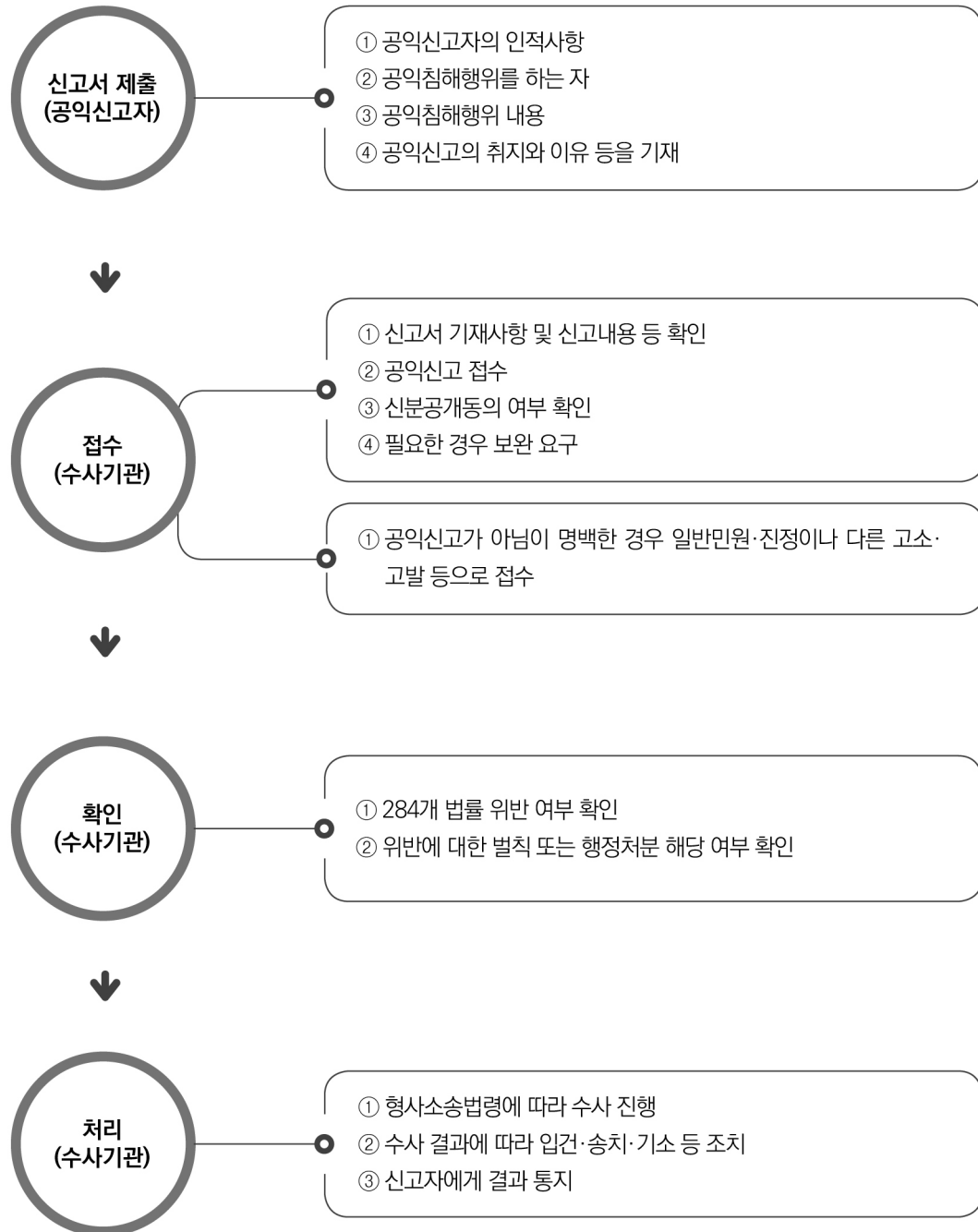
①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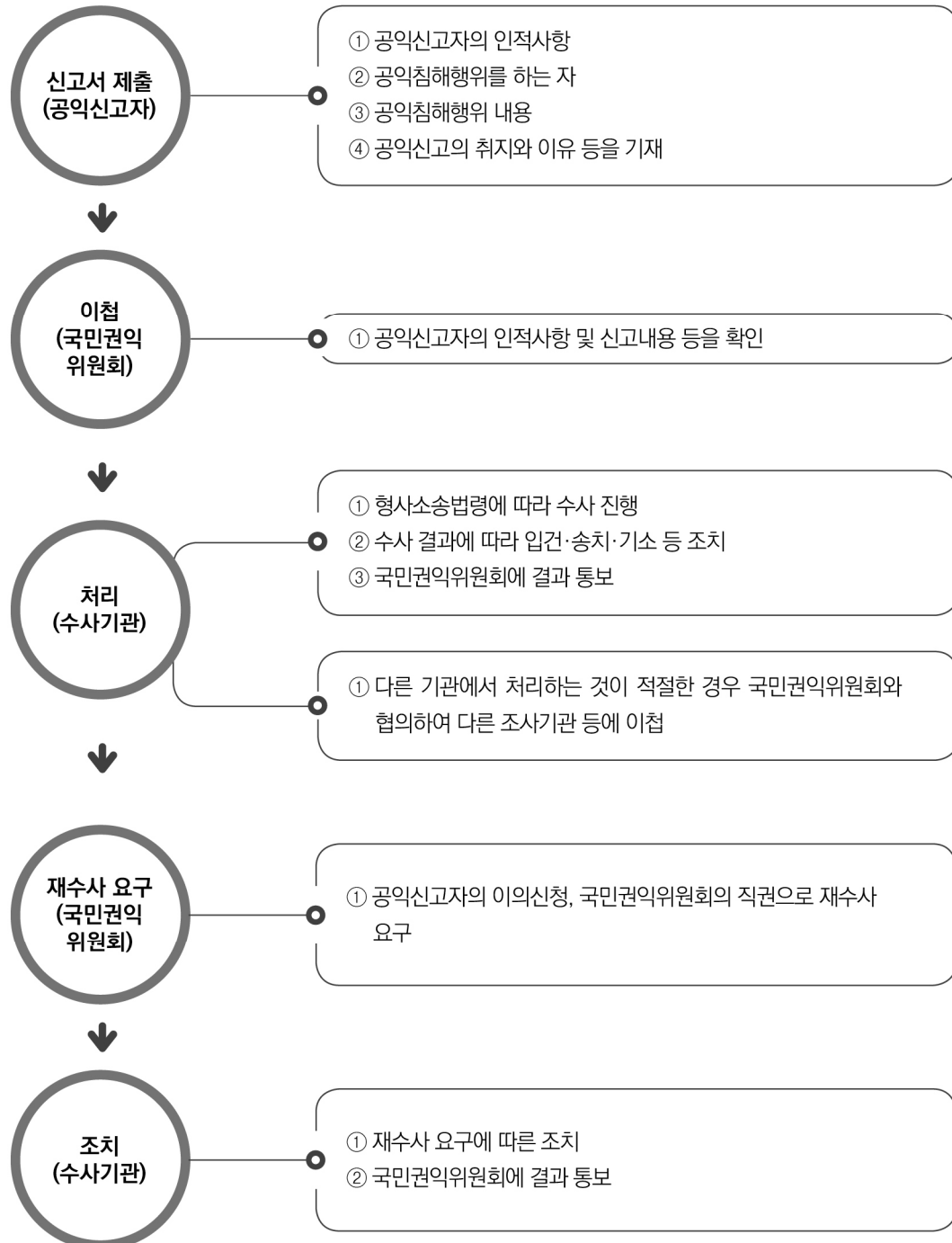
② 조사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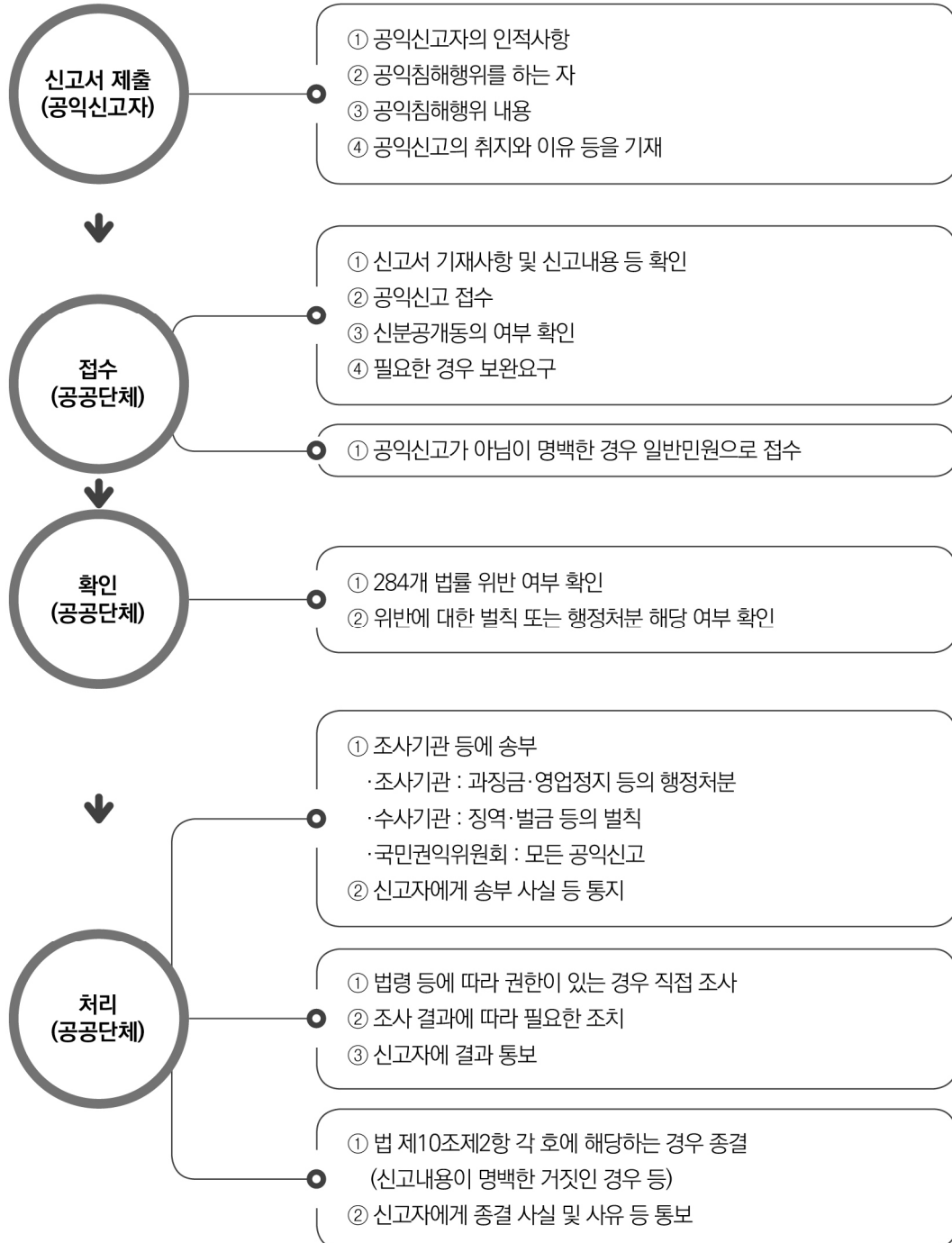
③ 수사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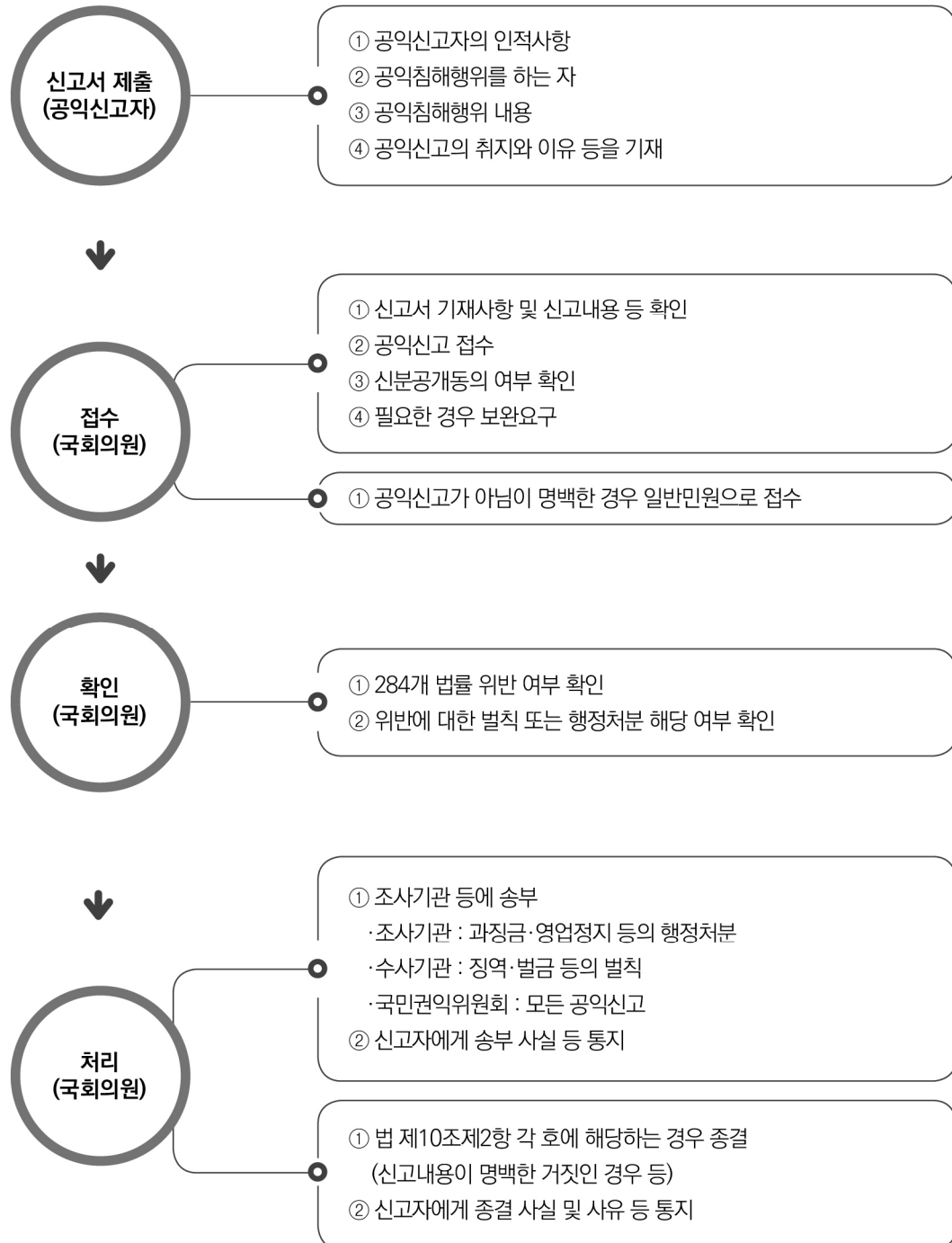
④ 수사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⑤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⑥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Q & A

Q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 기관은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Q 접수한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공익침해행위가 관할 및 직무범위 내의 사안인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Q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관할 및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접수한 공익신고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Q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법 제8조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종결하기 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가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가?

A 그렇다. 법 제11조는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가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준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받은 조사·수사기관의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고자 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고 단계별 보호주의사항 안내 및 모니터링 기능을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였다.

제 3 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은밀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부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적발·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부적응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힘만으로 불이익을 이겨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양심으로 인정되는 사회 풍토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건전한 공익신고 문화 정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탄생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밀 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신변 보호

-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보호 조치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2011년 제정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우선,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비밀 보장 의무 위반, 불이익조치,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등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 주체인 그 법인·개인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 주체인 법인·개인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양벌규정의 도입은 ‘UN 반부패협약’ 및 ‘OECD 뇌물 방지협약’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긴급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금의 실효성을 높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준 자에 대한 배상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18년 10월 시행된 개정법률에서는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요약)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の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방청인을 퇴장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해설

▶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준용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사·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주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과정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가명으로 서명하게 하고, 간인 및 날인은 무인(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사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위와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서 등에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관리카드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도록 한다.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신원관리카드는 부서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다른 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신원관리카드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관리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시행령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취 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공개 금지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자, 신고자의 신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³⁾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해 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12. 172쪽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고자 등이 각종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위해 공익신고 관련 문건 제출을 임의로 요구할 경우,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법 제12조 비밀보장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신고(신고성 민원 포함)를 처리하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공공단체 등의 담당자는 신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이첩·이송,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담긴 신고내용이 노출되거나 알려지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보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17.10.31. 개정).

▶ 신분공개 경위 확인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절차를 정하고,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대상 기관을 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협조의무를 규정하였다.

▶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고7 서식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참고).

판례 & 사례



원인별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색출행위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례

- 비리의혹 신고에 대해 조사를 받은 해당 시설 직원들 스스로 제보자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여 국장이 제보자를 포함한 직원들 동의를 받아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제보자 확인

신고를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

- 공익신고와 일반민원이 혼재된 진정이 신고창구와 일반민원창구에 동시에 접수되고,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진정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민원내용을 그대로 피진정업체에 송부하여 해당 업체 사장이 제보자에게 전화하여 취하 중용

유착관계에 의한 상호 교환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을 노출한 사례

- A학교 관련 언론보도가 있자 B기관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기관 출신 A학교 직원 C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상황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내부보고 후, 제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해당 문건의 사진을 C에게 휴대폰으로 전송

제3장

공익 신고자 보호



신고처리 단계에 따른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신고사건 처리부서 배분과정

- 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은 신고사건을 모아서 처리부서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1주일 단위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제보자, 주요내용, 담당부서 등을 포함하여 전 소관부서 직원에게 메모보고

조사 단계

-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서를 그대로 피신고자에게 보여줬으나 그 신고 내용으로 볼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고자임을 확인한 사례

쟁송 단계

- 신고사건 조사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A학교 교사들이 소청을 청구하자, A학교에서 소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B교육청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요구했고, B교육청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A학교에 송부

보도자료 배포 단계

- 신고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신고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Q & A

Q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스스로 미루어 짐작한 경우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보복이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피신고자가 스스로 정황상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까지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에 신고내용 등은 공개해도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 지

신변보호는 사전 예방인 비밀보호와 함께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보호조치이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체상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 설

➤ 신변보호의 필요성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은 신고를 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유형적·무형적 보복이 가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신변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공익신고자 주변에 가해지는 심리적이거나 물리적 위협 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예방적 보호수단으로 긴급성, 신속 대응성을 특징으로 한다.

▶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⁴⁾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변보호 조치 및 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 당사자인 신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신변보호 조치사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실제로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조치 필요성이 급박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즉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고 있으며, 신변보호조치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해설

➤ 책임 감면제도의 취지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으로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나중에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익신고자등이 상급자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것이므로 자진 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에 의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형벌, 징계 뿐 아니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책임감면 사례

△△시 쓰레기 소각장 환경침해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 해당 감독기관에서 공익신고를 한 직원들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농도 측정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청하였고, 검찰은 해당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함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참고: 공직자의 내부공익신고와 면책⁵⁾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에서는 공직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무상 비밀의 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공무원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한편으로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이를 처벌한다면, 전체적인 법질서가 공직자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비밀 누설 행위가 공직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형법」 제20조의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김준성, 정신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013. 275면

Q & A

Q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Q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는가?

A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러한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403

- 책임감면 규정은 부패사건의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부공익 신고와 관련된 범죄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약속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부패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연루되기 쉽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사건이 은폐되기 쉬운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공적 자금의 막대한 손실, 나아가 국가의 신뢰성과 신인도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 규정은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지켜낸 공익과 내부공익신고자 자신이 침해한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이 그가 침해한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 내지 징계는 감경할 뿐만 아니라 면제할 수도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공익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의 과거 범죄가 발견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발견된 범죄 혹은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4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이익조치의 종류(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불이익 조치 유형(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보호조치는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 공익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공익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개정 2017.10.31).

한편,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23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과 함께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전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불이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보호조치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시행령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4. 30.>

▶ 보호조치의 신청

1) 신청권자

공익신고자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 등도 보호조치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신청사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 후에 발생한 불이익조치 뿐 아니라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기간(제척기간)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4) 다른 구제절차 신청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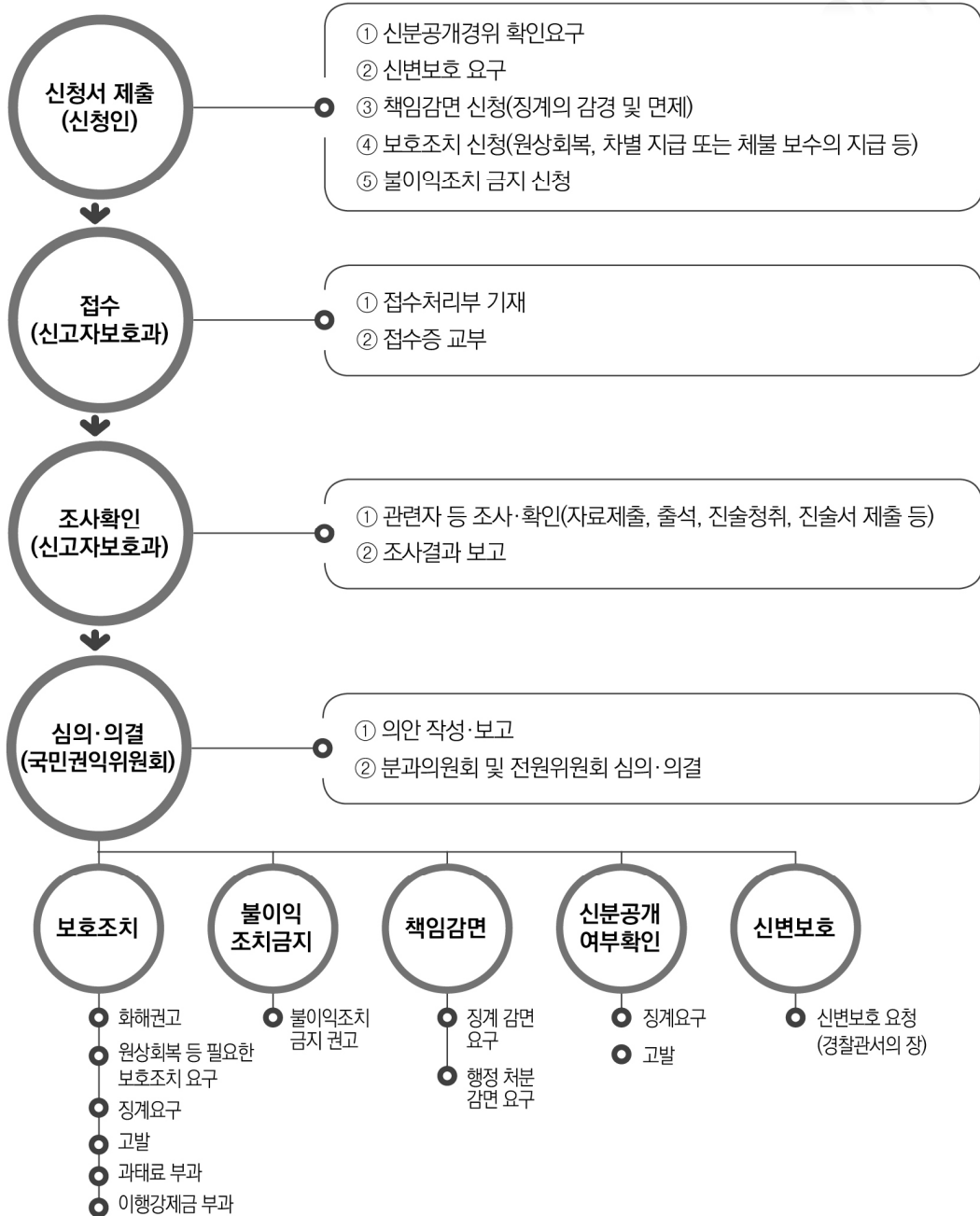
공익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계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과 별도로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중복신청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른 구제절차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신청기간을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Q & A

Q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분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및 이에 대한 보호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공익침해행위가 없더라도 특별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

A 그렇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32352

- 법 제18조 본문은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각하 여부의 결정을 재량 행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8조에 따른 각하 여부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 (중략)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자가 법 제18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5호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법 제18조 제6호 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가 부당정직,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전보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은 법 제18조 제6호 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 제18조 제7호가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를 별도의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지 못한 결과에 이른 경우에는 피고가 보호조치의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보호조치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 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이 정한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및 효과가 같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익신고자가 법 제18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시행령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 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4. 30.>

해설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 등을 위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조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진술 청취·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관련 자료제출, 출석·진술, 진술서 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 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시행령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보호조치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는 제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⁶⁾,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한다. 또한,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조치

영국의 고용심판소는 신고로 인한 해고라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상회복 조치는 이와 같이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면 신고자등이 유지하고 있었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말한다.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일까지로 한다.

▶ 보호조치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6) 판례는 보호조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등이 있을 것,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있을 것, 공익 신고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보호조치결정’이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결정은 행정심판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계약의 해지 등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결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기각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공익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점검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점검·확인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시행령 제17조의2).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16908

-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보호조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신고등이 있고, ②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있으며, ③ 공익신고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그 반대해석상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법 [별표] 또는 구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와 같은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한편 신고 내용 자체가 위와 같은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신고인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피고도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 권한은 없는 점, 법 제9조, 10조, 구 시행령 제8 내지 11조 등에 의하면 신고 내용 자체에 대한 조사는 피고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위 규정들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신고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등을 고려하면, 신고 내용이 위 벌칙 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규정의 해석상 명확하거나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신고 내용이 위 벌칙 규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신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중략)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공익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최종적으로 공익침해행위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된 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신고 내용의 존부에 관한 조사권한이 없고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법 제1조 참조)이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법 제3조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취 지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위반한 행위로서, 신고자가 신고 당시 신고 내용이 특정 공익침해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⁷⁾.

7) 원칙적으로 공익신고는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요구된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 상식선에서 ‘공익신고’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다.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도 법상 공익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공익신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도 불가능하게 된다.

‘공익침해행위’와 ‘불이익조치’의 성립여부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신고라도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은 가능할 필요가 있다(김기식,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61쪽 참고).

➤ 내부 공익신고자일 것

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

판례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보호조치결정

내부신고자에게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내부신고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보호조치의 효력

특별보호조치 결정은 법 제20조의 보호조치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 있고, 그 법률 효과의 확정시기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례

-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관련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공익신고함
 -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부당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보호조치 결정 관련 행정소송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 사건이 공익신고임을 인정(2014.5월)
- △△회사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해임’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보호조치 결정 관련 행정소송
 - (1심) 공익신고 후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고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취소되어야 함(2015.5월)
 - (2심) 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2015.9월)

Q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익신고라고 믿고 신고했을 경우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A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는 막연히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동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음.

284개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예. 「형법」상 사기나 무고에 대한 신고 등)를 신고한 경우 까지 특별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 제20조의2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만 제2조의 정의규정과 다르게 해석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바, 대상법률과 무관한 신고에 대해서도 특별보호조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현행 법 구조와는 부합하지 않음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

시행령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보호조치 결정 등의 이행 및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요구·권고,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결정과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불이익조치자가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배제한 이유

- 권익위의 보호절차는 신고자와 불이익조치자 간 분쟁에 대해 권익위가 제3자의 지위에서 분쟁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성격과 거의 동일함
- 권익위의 구성도 「행정심판법」상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이상으로 공정하게 구성되어 판정의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제3장

공익 신고자 보호

6 이행강제금

-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 ⑤ 위원회는 불이행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취 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불이익조치자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 설

▶ 행정법상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 함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할 시 일정액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장래에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을 의미한다.

▶ 금액 및 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종래에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되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는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에서 부과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2018.10.16. 개정).

사 례

- 노인요양시설 센터장이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센터장 계약 해지를 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
 - 시설을 담당하는 재단에서는 센터장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 이행을 위하여 재단에 이행강제금 2천만원(개정법 시행 이전 최대 금액)을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7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금액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취 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으나, 불이익조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권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 설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란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공익신고나 그 준비행위로 인한 감사가 예정돼 있거나, 징계 소환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준비행위에 대해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하는 이유

-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침해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속 기관에서 알게 된 경우 신고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하고 불응 시 징계 등의 보복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신고준비행위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나 호주 등도 '신고준비자'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간 및 조사 등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 각하(제18조), 보호조치신청에 대한 조사(제19조), 보호조치 결정(권고) 및 기각 결정(제20조)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내용을 불이행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Q 공익신고 준비행위란 무엇인가?

A 공익신고 준비행위라 함은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반 상황을 탐문하고 확인하는 포괄적인 행위이다.

소속 직원 등 내부 신고자가 신고 전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해 노출되어 인사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불이익이 반드시 신고 후에 야기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 하기 전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자료 수집 등 준비행위 단계에서의 노출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면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8 불이익조치 추정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 지

신고자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 사이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불이익조치의 입증 곤란, 신고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소송 대응 능력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이익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해 설

➤ 불이익조치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법률상의 사실추정)하고 있다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불이익조치자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다.

▶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판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불이익조치자의 입증책임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종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추정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불이익추정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70 판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제1호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공익신고가 있기 전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이유가 복잡·다단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취 지

공익신고자의 경우, 해고 내지 징계사유가 분명하게 제시되기 어려우며,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보복행위가 존재한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차별 및 집단따돌림 형태의 불이익 처분도 상당하고, 부당해고나 징계 등이 사후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의 불이익 처분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소속기관과 신고자 간의 분쟁에 대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전적 해결에 기여하고, 사후의 권리구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해 설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화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권고 전까지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화해안에는 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는 조건을 넣을 수 없다.

▶ 화해의 효력

관계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관계 당사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나 소송 등을 통한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해외 입법사례

영국은 ACAS(알선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처분의 사전적 해결절차를 두고 있음

※ ACAS(알선조정중재위원회) 제도 : ACAS는 1976년에 설립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개입하는 임의적 조정중재기구이며,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하지 않고, 분쟁의 주체별로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으로 구분하되,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에 있어 개별적 분쟁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구임

10 협조 등의 요청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공익 신고자 보호

해설

➤ 협조 요청 기관

관련 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익 신고를 접수한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포함된다.

➤ 협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

공익신고에 대한 구체적 판단 및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과정 또는 신고 후에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심리적 치료나 쟁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전문기관의 상담 등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보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 협조대상 기관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와 의료기관 등의 업무협조 사례

- **(협회)**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리신고 지원 변호사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협력
- **(의료기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의료 지원을 진행
- **(행정기관)** 회사 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내부공익신고자가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구분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내부공익신고자가 본인이 근무했던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후 해당 기관, 기업 등을 퇴사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하나로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반영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

취 지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밀엄수义务的 적용을 배제하고,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하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립할 수 있다.

해 설

▶ 특례 적용 신고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은 제외되는데, 이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와 신고제도가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제9조, 2014.1.14.)

▶ 신고(이의제기)의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 「균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신고 등의 방법·절차

1) 이의 제기

가) 이의 제기 기관 등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등을 지시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정치운동등을 지시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의 제기의 방법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다) 이의 제기의 처리(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직무집행 거부

「형법」 제122조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처벌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등이 이의제기를 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직무수행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보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3) 공익신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등을 지시받은 경우, 다른 공익신고와 달리 공익신고 기관을 ‘수사기관’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책임 감면 및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정치운동등을 지시받은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정치운동등을 지시받은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4 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신고 활성화에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의무를 가지는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여 공익신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보상금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으로 상향하여 보상금액을 현실화하였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및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제거에 기여함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시 대상 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포상금 지급

현저히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급(내,외부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내, 외부 공익신고자)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취지 및 연혁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보상금 지급 규정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하였다.

해설

▶ 지급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비해,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소속 근로자, 인턴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와 ④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 지급 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판례는 공직유관단체인 ○○공단으로 환수된 비용은 직접 공단에 귀속되므로 이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구별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408).

-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처분·판결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참고: 법제처 법령해석)
-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 부과된 벌과금의 납부 등이 불가능하거나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거부 또는 지연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과금의 납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없더라도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 지급 절차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보상금은 벌칙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 산정기준

보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액(보상대상가액)의 4~20% 수준에서 결정된다.

보상금 산정기준(시행령 별표2)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금 감액 사유(시행령 제22조)

-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2014.10.31.부터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 10.30.까지 신고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지급건수 제한 없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나, 그 이후 신고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고시 제4조)

-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예) 신고자가 행정기관 A부서에서 '축산시설 명단'을, B부서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두 명단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현황 자료만을 가지고 수십명의 축산업자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 ☞ 예) 개별적, 구체적 현장 증거없이 인터넷 지도 검색 등을 통해 농지·산지의 타 용도 불법 전용 화면만을 캡처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무작위 신고하는 행위
-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 예) 신고자가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조장하고 이를 촬영한 후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예) 「건축법」 위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피신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행위
-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대법원, 2008두12726, 2008. 11. 13.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법 제36조 제2, 3항에 의해 가지는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정한 부과 또는 환수 등의 처분이나 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위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은 신고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부패행위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 등의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6조 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정지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40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개의 특수법인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건강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포함한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건강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검진비용을 포함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을 관장하므로,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한 부당 검진비용은 직접 공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 검진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이 환수 처분한 공단부담분 건강검진비용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의 실현 내지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같은 취지로 공단 환수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09, 2016. 6. 2.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공익신고자가 구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이하 '벌칙·부과·처분·판결'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벌칙·부과·처분·판결을 통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과 공익신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 공익침해행위 자체만으로 벌칙·부과·처분·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고된 공익침해행위가 벌칙·부과·처분·판결의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면 그 행위만으로는 아무런 벌칙 등이 이루어질 수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이 일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Q & A

Q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에 최초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 기업에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금·과징금·과태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처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Q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A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파파차리)의 신고가 적발이 용이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집중되면서 영세업소의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다. 2015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상금을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내부 공익신고자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였다.

Q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 중 어느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 신고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포상금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법제처 법령해석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질의요지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장

공익 신고자 보상

2 포상금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시행령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2.]

취 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더 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포상금 지급 사유

포상금은 다음의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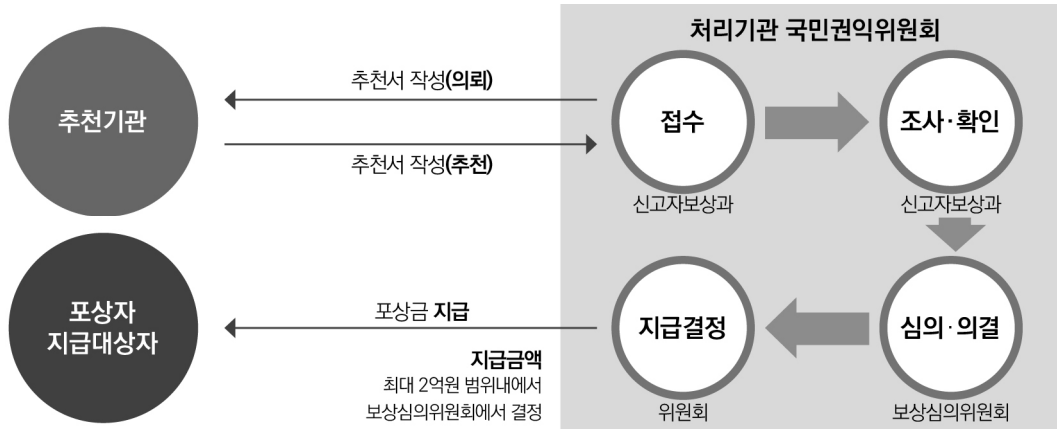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 절차: 지급대상자 추천 또는 직권 선정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달리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익신고 기관에서 공익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추천시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 참조).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추천 이외에도 공익증진의 기여도가 큰 공익신고 등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2억원이고, 처분의 경중, 기간, 금액, 인원 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초로 “전원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한다(참고4.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중복지급 금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법 제28조).

▶ 「상훈법」에 따른 포상 추천

공익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원상회복 등을 통한 보호조치 이외에도 신고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시행령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4. 30.>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신설 2018. 4. 30.>

취 지

공익신고로 인해 지출한 비용 및 경제적 손실 등으로 신고자가 받은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에서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 설

▶ 지급 대상

구조금은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손해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다228083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공익신고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등의 친족이나 동거인에게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지급 사유 및 산정 기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비용이나 치료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구조금을 산정한다(시행령 제26조).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Q&A 참고)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Q&A 참고)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으로 하되,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한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 절차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및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 대위 청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의2)

▶ 긴급 구조금

구조금 지급절차의 예외로 도입된 ‘긴급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금의 취지를 강화하였다(개정 2017. 10. 31.)

긴급 구조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긴급 구조금은 다음의 경우 중 긴급한 피해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Q & A

Q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독성 폐수의 심야시간 무단 방출 등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의 폭행·협박 등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 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Q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하여 그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취 지

동일한 신고를 사유로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을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중복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과 다른 법령상 보상금의 관계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다른 법령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는 경우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중복수령은 금지된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공제하고 지급된다.

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다수의 법률에서 보상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 5. 중앙행정기관 운용 신고포상금제도 현황 참조), 이러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를 금지하지는 않되, 중복해서 지급 받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보상금 등의 공제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반환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상금·구조금 반환사유(법 제29조)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긴급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지급받은 긴급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위 법 제29조와 같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2조에 의하여 보상금의 환수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

1) 취지

신고로 인한 재정수입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입과 보상을 연계하고 있다.

2) 절차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보상금 상환액을 편성하지 못해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보상금 상환액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14.2월)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취 지

공익신고자등은 불이익조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2017. 10. 31. 신설)하여 3배 이하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해 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여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과 악질적인 가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⁸⁾.

▶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일 것
-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 사업자의 부당성 내지 위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한다.

▶ 손해에 대한 3배 이하의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무원칙적으로 인정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액수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보적 배상액을 3배 이내로 한정⁹⁾하였다.

배상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이점인 (200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38), 187-243.

9) 김성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 보호원, 연구보고서(2003.5.), 102-113면.

제 5 장 벌 칙

1 벌칙 및 과태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2 양벌규정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연혁 & 취지

양벌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자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묻지 않아 책임 회피 및 책임 전가의 우려가 있었다.

해설10)

▶ 양벌규정의 의미

형벌법규를 직접 위반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는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실제 행위자와 함께 처벌함으로써 특정 행정 목적에 반하는 위법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행위주체(요건)

1) 사용인 등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사용인 등)은 본인인 사업주(“그 법인 또는 개인”)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업무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이하 신동운 형법총론(제11판), 115~123쪽 참조

2)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된다.

3) 사업주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은 사용인 등이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 처벌(해당 조문의 벌금형)된다.

4) 업무관련성

양벌규정이 있다고 하여 사업주가 사용인 등의 모든 제30조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적용된다.

➤ 처벌의 예외

책임주의¹¹⁾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해외사례

‘UN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

-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 도입 등 자국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반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

11)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

제 6 장 참 고

참고1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해외 입법례

구분	공익신고자 보호법(한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영국)	공익통보자 보호법(일본)
신고 주체	• 누구든지	• 기업의 근로자 • 일반공무원	• 기업의 근로자 • 일반공무원
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284개 법률 별칙·행정 처분 대상행위	• 범죄행위 • 법적준수의무 위반 • 부정행위 • 근로자의 건강·안전 위협	• 개인의 생명·신체 보호 • 환경의 보전 • 소비자이익 옹호 • 공정한 경쟁 확보 ※ 약 450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기관	• 기업,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공공단체 中 선택 가능	• 기업(1차)→정부기관(2차)→대외제보(3차)	• 기업(1차)→행정·감독기관(2차)→외부기관(3차)
신고 방법	• 인적사항 기재 및 증거 제출	• 별도 방법 미규정	• 별도 방법 미규정
신고 요건	• 허위·부정목적 신고 배제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믿음	• 허위·부정목적 신고 배제
처리 절차	• 기업은 조치방안 마련 • 행정·감독기관은 조사 및 조치 실시 • 권익위는 확인 후 조사·수사기관 이첩 •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타접수기관 송부	•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보호 사항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권고 • 민형사상 책임감면 •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 부당해고 등 불이익금지 • 노동법원 판결 시까지 신분보장 • 신고금지 규정의 무효	• 해고 무효, 파견계약 해제 무효 등 원상회복 • 불이익취급 금지
보호 절차	• 권익위에 보호 요청	• 부당해고 등 불이익금지 • 노동법원 제소	• 민법 등에 따라 재판청구
지원 제도	• 보상금(최대 30억원, 내부신고자), 포상금(내·외부 신고자, 최대 2억원) 및 구조금(내·외부 신고자) 지급	• 보상금·구조금제도 없음	• 보상금·구조금제도 없음
강제 규정	• 보호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배상판결 가능(상한액 없음)	• 강제·제재 조항 없음

참고2 공익 유형별 대상법률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건 강〉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6	검역법(보건복지부)
7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8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9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10	국민영양관리법(보건복지부)
11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6	먹는물관리법(환경부)
17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19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0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2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24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5	식품신제품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6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28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29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0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32	위생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5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7	의료법(보건복지부)
38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3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43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44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5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6	지역관리법(보건복지부)
4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48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49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5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52	학교급식법(교육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3	학교보건법(교육부)
54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55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5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
〈안 전〉	
1	개항질서법(해양수산부)
2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3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4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5	건축법(국토교통부)
6	건축사법(국토교통부)
7	경비업법(경찰청)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10	광산보안법(산업통상자원부)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2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14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16	낙시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17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18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19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2	도로교통법(경찰청)
23	도로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4	도선법(해양수산부)
25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28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31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32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34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35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36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3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38	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39	수난구조법(해양경찰청)
40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3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46	어선법(해양수산부)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4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51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2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정안전부)
53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54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5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행정안전부)
56	재해구호법(행정안전부)
5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58	전기공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59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1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2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64	주택법(국토교통부)
65	지진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66	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7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68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7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74	항공법(국토교통부)
75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76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77	항만법(해양수산부)
78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79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한 경〉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3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9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10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12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3	독도 등 도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5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환경부)
19	사방사업법(산림청)
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21	산림보호법(산림청)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23	산지관리법(산림청)
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26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8	수도법(환경부)
29	수산업법(해양수산부)
30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32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33	악취방지법(환경부)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35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36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별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안전부)
40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환경부)
41	자연공원법(환경부)
42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4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47	지하수법(국토교통부)
48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49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50	폐기물관리법(환경부)
5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52	하수도법(환경부)
53	하천법(국토교통부)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7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5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59	환경보건법(환경부)
6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61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소비자 이익〉	
1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6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17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1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20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2	보험업법(금융위원회)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부)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28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30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31	상표법(특허청)
32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33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35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3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39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40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42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43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45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46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48	유아교육법(교육부)
49	은행법(금융위원회)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1	임대주택법(국토교통부)
52	입양특례법(보건복지부)
53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5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5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56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5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5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62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63	철도사업법(국토교통부)
64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6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7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68	해운법(해양수산부)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공정한 경쟁〉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12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14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국방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4	방위사업법(국방부)

참고3 「신고성 민원」의 개념 및 유형

□ 신고성 민원 개념

-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이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 ('15년) 190만건 → ('16년) 230만건 → ('17년) 310만건

□ 주요 신고성 민원 유형

- 제보성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중 민원인이 직접 '제보성 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으로 '16.7월부터 시행
- 갑질피해 민원
 - 갑질신고센터로 신청된 갑질피해 민원으로 '17.9월부터 시행
-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민원
 -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중 민원 내용이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원
- 개별 신고창구 민원
 - 각 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신고창구로 신청된 민원

주요 기관 개별 신고창구

- | | |
|-----------------------------|-----------------------|
| • 대규모 유통업 위반 신고 (공정위) | •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국토부) |
| • 대리점법 위반 신고 (공정위) | • 스포츠비리 신고 (문체부) |
|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국세청) |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신고 (금감원) |
| • 부당노동행위 신고 (노동부) | •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금감원) |
| • 보험사기 신고 (금감원) | • 의약품 유통 비리 신고 (복지부) |
| •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약처) | • 유치원 비리 신고 (교육부) |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 스마트 국민제보 (경찰청) |
| | •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해수부) |

참고4 포상금 지급기준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할 수 있다.
- 나.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다.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라. 포상금의 감액 등은 보상금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마.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 보상심의위원회는 처분의 경중·기간·금액·인원 수·내부 공익신고자 여부·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 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라.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 금액을 산정한다.

나.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7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 7명 미만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주의·경고 등 경미한 시정명령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제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제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제 현저히 기여한 경우
5)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제 현저히 기여
6)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침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제 현저히 기여한 경우
7) 1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비교 :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제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령 등의 개정제 경우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개정제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마.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5) 1,000만원 이하	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관행적·반복적인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6) 1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 비고 :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을 말한다.

2. 국민의 관심도,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증진시책의 도입이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5 중앙행정기관 운용 신고포상금제도 현황¹²⁾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8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고용보험법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포상금	국가기술자격법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위탁 및 비용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	직업안정법	○
교육부	1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	1	테러신고 포상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방부	2	6·25 전사자유해 신고포상금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군 관련 범죄신고 보상금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7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불법 여객자동차운수업자 신고포상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미등록 자동차 신고포상금	자동차관리법	○
		대포차 신고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포상금	주택법	○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기획재정부	3	예산·기금 불법지출 신고포상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보조금 편취 신고포상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성찰 및 발전방안' 토론회('18.10.5), 자료집 참조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당 여부
농림축산 식품부	8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농지법	○
		동물학대행위 신고포상금	동물보호법	○
		수입식물 검역위반 신고포상금	식물방역법	○
		양곡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양곡관리법	○
		불법경매 신고포상금	한국마사회법	○
문화체육 관광부	3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승부조작·스포츠토토 불법구매행위 신고포상금	국민체육진흥법	○
		출판물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무부	4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국가보안법	
		마약류범죄 신고포상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몰수대상재산 신고포상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7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	약사법	○
		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어린이집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의료급여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포상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자원부	3	계량기변조 신고포상금	계량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유출 신고포상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당 여부
여성가족부	2	아동·청소년 성보호 신고포상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보호법	○
해양수산부	5	부정·불량 소금 신고포상금	소금산업 진흥법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수산자원관리법	○
		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 신고포상금	해양환경관리법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해운법	○
행정안전부	3	안전신고 포상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방세기본법	
		지방보조금 편취 신고포상금	지방재정법	
환경부	4	수질오염물질배출 신고포상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습지보호구역 위해 신고포상금	습지보전법	○
		밀렵신고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위원회	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소매업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 위원회	3	공익침해행위 신고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포상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3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호저축은행법	○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무역위원회	1	불공정무역행위 신고포상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	1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원자력안전 위원회	1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원자력안전법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3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정치자금법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포상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 위원회	1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경찰청	4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뺑소니교통사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경찰공무원비리 신고보상금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테러범죄예방공로자 보상금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관세청	2	관세 등 탈루 및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관세법	
		밀수신고 포상금	관세법	
국가보훈처	1	보훈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세청	5	탈세제보 포상금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II. 조문별 해설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당 여부
농촌진흥청	1	부정·불량 농약 신고포상금	농약관리법	○
문화재청	2	발견매장문화재 신고포상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사범 신고포상금	문화재보호법	○
방위사업청	1	방산기술보호 포상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병무청	2	병무부조리 신고포상금	병역법 시행령	
		대체복무 부실사례 신고포상금	병역법 시행령	
산림청	5	목재 불법유통 및 미등록 목재생산업자 신고포상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불가해자 제보포상금	산림보호법	○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금	산지관리법	○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소방청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 안전처	4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
조달청	2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클린신고포상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특허청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청	3	범죄신고 보상금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출입국관리법·밀항단속법·제주특별법 위반사범 신고포상금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해양경비법	
농협조합 선거관리 위원회	1	농협조합선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농업협동조합법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당 여부
산림조합 조합선거 관리위원회	1	산림조합선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산림조합법	
수협조합 선거관리 위원회	1	수협조합선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선거 관리위원회	1	중소기업협동조합선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계	122			65

참고6 공익신고와 부패신고¹³⁾ 비교

□ 신고 접수·처리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근거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 부패행위(법 제2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법 제2조)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자	• 누구든지(법 제55조)	• 누구든지(법 제6조)
신고처	• 권익위, 수사기관 ※ 단, 보상은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함	• 권익위, 수사기관 ※ 각급 기관에 한 신고건도 보상 대상임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 소관 행정·감독기관, 관련 공공단체
	• 감사원	-
	-	•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사용자(법 제6조)
신고 방법	• 기명, 서면 신고 원칙 • 구술신고 예외 인정(법 제58조)	• 좌동(법 제8조)
신고 처리	• 이첩, 공공기관 송부, 불이첩(종결)	• 이첩, 송부, 종결
	• 고발 및 재정신청 ※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신고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60조④)	• 신고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9조⑥)
	• 재조사·재수사 요구(30일)(법 제60조④)	• 재조사·재수사 요구(60일)(법 제9조⑦)
	-	•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법 제9조⑤)

13) 부패신고의 경우, 2019.10.17 시행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17호)을 기준으로 함.

□ 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 신고자 및 협조자(‘공익신고자등’)
내용	• 누구든지 신고자,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협조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됨 (법 제64조① : 신고자의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됨 (법 제12조①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재	• 징계요구(법 제64조④ 신고자의 비밀보장)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	• 징계요구(법 제12조④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①)

○ 신분보장(불이익조치 금지)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법 제62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고자 및 협조자(공익신고자등) (법 제1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유형	• 신분상 불이익조치 • 부당한 인사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명단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결과 공개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법 제2조제7호 : 정의)	• 좌등 (법 제2조제6호 : 정의)
제재	•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①제1호) • 인사상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②제1호)	•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②제1호) • 인사상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③제1호)
	•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②제1호)	•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③제1호)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 그 밖의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②제1호)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없음	- 그 밖의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③제1호)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없음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 제63조 : 불이익 추정)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 소를 제기한 경우(법 제23조 : 불이익조치 추정)

○ 신분보장(보호조치)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내용	- 신분보장등의 조치 결정 (법 제62조3①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등) - 원상회복 조치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신분보장등 조치 권고 -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대상) (법 제62조3②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등)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법 제62조의 5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신분보장조치 신청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불이익 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45일 이내 정지시키는 제도	- 보호조치결정 (법 제20조① : 보호조치 결정 등) - 좌동 - 보호조치 권고 - 좌동 (법 제20조② : 보호조치 결정 등) - 특별보호조치결정 (법 제20조의2 : 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 가능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제재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불이행 :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①제2호) - 이행강제금(법 제62조의6)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②제2호) - 이행강제금(법 제21조의 2)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을 불이행 한 경우에는 제재없음	※ 좌동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불이행자 : - 형사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③)	- 특별보호조치결정 불이행 : - 과태료(2천만원 이하)(법 제31조②) - 이행강제금(법 제21조의 2)
기타	-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관련 출석, 진술서·자료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 거부 : - 과태료(3천만원 이하)(법 제91조①) ※ 개정전 1천만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시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거부 : 과태료(3천만원 이하)(법 제31조①)
	-	• 보호조치 사후 점검(법 제20조⑤)

○ 신변보호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좌동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제64조의2 : 신변보호조치)	• 좌동 (법 제13조 : 신변보호조치)

○ 책임감면 등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법 제 66조 : 책임의 감면)	• 좌동 (법 제14조 : 책임의 감면 등)
내용	• 형, 징계 감면 가능(법 제66조①, ②)	• 형, 징계 감면 가능(법 제14조①)
	-	•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법 제14조②)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법 제66조③)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법 제14조③)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	• 공익신고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무효 (법 제14조⑤)
	-	•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 제14조④)
	•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법 제62조의3⑤) ※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을 요청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법 제16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기타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법 제62조②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법 제15조②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②제2호)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③제2호)
화해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법 제63조의2 : 화해의 권고 등)	• 좌동 (법 제24조 : 화해의 권고 등)

□ 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

○ 보상금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누구든지(법 제 68조②)	• 내부 공익신고자(법 제26조①)
신청 기간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법 제68조⑤)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확정된 날부터 5년 (법 제26조③)
지급 사유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비용절감(법 제68조②)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 (법 제26조①)
	- 몰수·추징금(영 제72조①제1호)	- 몰수·추징금(법 제26조①제2호)
	- 국세·지방세(영 제72조①제2호)	- 국세·지방세(영 제21조제2호)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영 제72조①제3호)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영 제21조제3호)
	- 계약변경에 따른 비용절감 (영 제72조①제4호)	-
	-	- 벌칙·통고처분(법 제26조①제1호) - 과태료·이행강제금(법 제26조①제3호) - 과징금(법 제26조①제4호) - 부담금·가산금(영 제21조제2호)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제외(영 제72조①제5호)	-
금액	• 상한 : 30억원(영 제77조③)	• 상한 : 30억원(영 제22조②)
	• 하한 : 없음	• 하한 : 20만원(영 제22조③) * 1인당 연간 10건으로 지급 제한
상환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상환 (법 제70조의2①)	• 지방자치단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 (법 제29조②)

○ 포상금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누구든지(법 제 68조①)	• 누구든지(법 제 26조의 2)
지급 사유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법 제 68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법 제26조의2①)
	- 공소제기(영 제71조①제1호)	-
	- 기소유예·중지, 통고처분 (영 제71조①제1호)	-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법 제26조의2①제1호)
	-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영 제71조①제1호)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법 제26조의2①제2호)
	- 제도개선에 기여 (영 제71조①제2호)	-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 (법 제26조의2①제3호)
	- 과태료·과징금(영 제71조①제1호) - 정책 개선 등으로 재산상 손실 방지 (영 제71조①제3호)	- 과태료·과징금(내부 공익신고자 제외)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영 제25조의2)
	- 금품등의 수수 자진신고 (영 제71조①제4호) ※ 시행령 개정시 삭제 예정(「청탁금지법」과 충돌)	-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보상금 감액·제한 사유에 해당(영 제22조①제4호)
	-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영 제71조①)	-
금액	• 2억원(영 제71조②) ※ 자진신고의 경우 5억원	• 2억원(영 제25조의3①)

○ 구조금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법 제68조③)	• 좌동(법 제27조①)
내용	• 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 비용, 임금손실액 및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지급 가능(법 제68조③)	• 좌동(법 제27조①)
		• 긴급 구조금(법 제27조②)

○ 기타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환수	대상	• 보상금, 구조금(법 제70조의2)
	요건	• 보상금, 구조금(법 제29조①)
		• 좌동(법 제29조①)
손해배상	-	- 징벌적 손해배상 -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 배상책임 (법 제29조의2 : 화해의 권고 등)

참고7 서 식

1. 공익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동의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 비실명 대리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동의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제6장

참 고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인쇄일	2019년 6월
발행일	2019년 6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우) 30102
전 화	(044)200-7750
F A X	(044)200-7948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인쇄처	(주)삼일기획 (044)866-3011